

환경보건부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신청인 사업 운영자와 동일

성명: _____ 미들네임: _____ 성: _____
 기관명: _____ 비즈니스 전화번호: _____
 주소 1: _____ 휴대폰 번호: _____
 주소 2: _____
 시: _____ 주(State): _____ 집코드(Zip): _____
 이메일: _____ 선호하는 연락방법: _____

청구서 발송지 사업 운영자와 동일

성명: _____ 미들네임: _____ 성: _____
 기관명: _____ 비즈니스 전화번호: _____
 주소 1: _____ 휴대폰 번호: _____
 주소 2: _____
 시: _____ 주(State): _____ 집코드(Zip): _____
 이메일: _____ 선호하는 연락방법: _____

서약서

담배류 판매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사업자는 멀티노마 카운티 법령 제21.564에 의거하여 사업 운영자가 담배류 판매 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내용을 고지 받았다는 서약서를 서명 후 제출해야 합니다. 담배류 판매 혹은 교환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판매점은 운영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요구합니다. 사업 운영자는 담배류를 판매하는 직원 모두 판매 허가과 관련한 연방정부, 주 정부 및 관할 지역에서 요구하는 모든 법적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하며, 이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정부, 주 정부 및 관할 지역 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배류 판매와 관련한 법률 교육 자료는 본 신청서와 함께 귀하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저, (사업 운영자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_____ 는(은), 멀티노마 카운티 내 담배류 판매 허가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모든 법적 사항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담배류를 판매하는 직원 모두 교육 하겠습니다.

사업 운영자 서명

날짜

갱신 신청 및 \$683 라이선스 수수료

(신청서 진행을 위해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지불이 요구됩니다)

우편 메일: \$683 의 체크 혹은 머니 오더를 동봉 후 본 신청서와 함께 다음 주소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ATTN: TRL, 847 NE 19th Ave, Ste 350, Portland OR 97232.

직접 방문: 작성을 완료한 신청서를 \$683 의 체크 혹은 머니 오더와 함께 다음 주소지에 방문하여 제출하십시오.
 847 NE 19th Ave, Ste 350, Portland OR 97232.

*근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00 - 오후 5:00. 주요 국경일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질문 사항: 503-988-41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mhealthinspect.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담배 및 니코틴

제품 판매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본 법령에 있어서, 담배 제품은 사람이 소비하는 용도인 담배로 만들어졌거나 담배에서 유래된 물질로 정의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가렛, 시가, 소형 시가, 파이프 담배, 물담배(시샤), 코담배(snuff), 씹는 담배 비디(bidis) 및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거나 니코틴을 전달하는 전자 시가렛이나 흡입식 전달 장치, 베이프 액상, 전자 담배 액상 또는 사람이 소비하는 용도인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액체. 여기에는 니코틴 패치, 껌 또는 캔디와 같은 금연을 위한 FDA 승인 니코틴 제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1 세 이상인 성인에게만 담배 제품 판매가 허용됩니다. 30 세 미만으로 보이는 손님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생년월일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CFR § 1140.14(a)) (ORS 431A.175) (MCC § 21.563)

담배 소매 면허에 관한 규정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점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 멀트노마 카운티 보건부 환경보건청의 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 프로그램에서 발급한 1 년간 유효한 담배 소매 면허증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MCC § 21.561)

멀트노마 카운티는 손님에게 쉽게 눈에 띄도록 판매점에 게시해야 하는 종이 허가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MCC § 21.561)

모든 판매점은 오리건주 법에 따라 21 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 또는 흡입식 니코틴 전달 장치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한 표지판을(허가증과 함께 제공된) 반드시 진열해야 합니다.

(ORS 431A.175)

포장

위와 같이 정의되는 담배 제품은 반드시 건강 관련 경고 문구가 포함된 원래의 포장 상태로 판매해야 합니다. 시가렛은 20 개입 포장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담배 제품은 날개 담배("loosies"라고 알려진) 또는 씹는 담배처럼 날개로 판매하기 위해 개봉해서는 안 됩니다.

(MCC § 21.563) (CFR § 1140.16(b)) (CFR § 1140.14(2d)) (ORS 431A.175)

흡입식 니코틴 전달 장치는 반드시 법에 따라 포장 및 이에 상응하는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합니다. (ORS 431A.175)

판매시점관리(POS)

모든 담배 제품은 종업원/주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카운터 뒤쪽이나 잠금장치가 된 케이스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ORS 167.407)

자동판매기에 의한 담배 제품 판매는 21 세 미만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시설에서만 허용됩니다. (ORS 167.402)

관측 활동

멘톨이나 '순한,' '저 타르' 또는 '마일드'라는 라벨이 붙은 담배를 제외하고 향을 첨가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1 US Code § 387g) (Section 911(b)(2)(A)(ii)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담배 제품을 구매할 때 증정품이나 기타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CFR § 1140.34(b))

21 세 미만 출입이 금지된 장소를 제외하고 담배 샘플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1 US Code § 387 a1(a)(2)(G)) (ORS 180.486)(431A.175)

멀트노마 카운티와의 협력

담배 소매업자는 멀트노마 카운티 조사관이 연례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MC TRL Rules § H.2.a)

담배 소매업자는 시정 계획에 협조해야 합니다. (MC TRL Rules § H.2.b.i)

담배 소매 허가증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멀트노마 카운티 내에서 영업점을 옮기는 경우 새로운 판매점에서 담배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새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영업점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새 소유주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기 전 그 판매점에 대한 허가증을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03-988-4163, hlth.tobacco.prevention@multco.us